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4가단24510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소진

별지